

1. 개정이유

폭발 또는 화재 예방조치를 위한 사업주 의무 및 화재위험 감시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화재 또는 폭발 위험 장소에서 동시 작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,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요건과 측정장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폭발·화재 사고예방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시 사업주 의무 구체화(안 제232조)

- 1) 현행 사업주의 증기·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예방 조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
- 2) 통풍·환기 및 분진 제거 조치에 환기장치의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

나. 화재감시자 감시업무 구체화(안 제241조의2)

- 1) 사업주가 용접·용단을 하는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에 대한 감시 업무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
- 2) 화재위험 감시업무 내용을 화재 위험물질 확인 및 화재 예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함

다. 화재·폭발 위험장소 화기사용 동시작업 금지(안 제242조)

- 1) 화재·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다른 작업과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

2) 인화성 물질 등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화기사용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

라.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요건 확대 및 측정 장비에 원격 측정 시스템 추가(안 제619조의2)

1)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산소·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은 산소농도 측정이 어려운 실정

2) 산소·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범위에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원활히 산소농도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함

3) 최근 센서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밀폐공간을 동시에 관리하는 “원격 가스농도 측정시스템”을 측정장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1. 13. ~ 12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2조제1항 중 “해당”을 “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”으로, “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”를 “분진제거 등 적정한 배기 또는 흡기 장치를 설치 하여야”로 한다.

제2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화재의”를 “화재 위험 물질이 있는지 여부 및 화재 예방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의”로 한다.

제242조 중 “금지하여야”를 “금지하여야 하며, 특히 화재 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야”로 한다.

제6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측정하여”를 “측정(「전파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. 이 장에서 같다)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보건관리전문기관”을 “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이론·실습 교육을 이수한 자

6.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2조(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)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,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<u>해당 증기·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·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제232조(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</u> --- ----- ----- <u>분진제거 등 적정한 배기 또는 흡기 장치를 설치하여야</u> ----- 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41조의2(화재감시자)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·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<u>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·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같은 장소에서 상시·반복적으로 용접·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	제241조의2(화재감시자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화재 위험 물질이 있는지 여부 및 화재 예방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의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

비·기구,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·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42조(화기사용 금지)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.

제619조의2(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)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(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2조(화기사용 금지) -----

----- 금지하여야 하며, 특히 화재 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-----
----.

제619조의2(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) ① -----

---- 측정(「전파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. 이 장에

1. · 2. (생략) 3. <u>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</u> 4. <u>법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 전문기관</u> 5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<u>서 같다)하여</u> ----- 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이론·실습 교육을 이수한 자</u> 4. ----- <u>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</u>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